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 67~67p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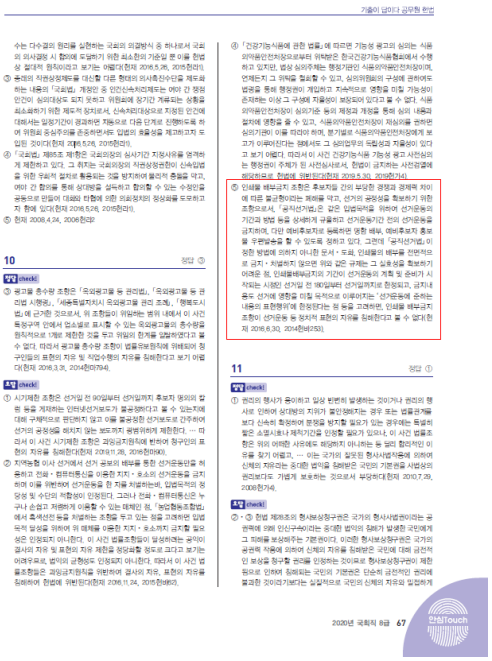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헌법 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참여에 두텁게 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5.26, 2015헌라5). ③ 음성의 자문상정제도를 대신할 다른 형태의 의사촉진수단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중 인간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정쟁 인간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인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헌재 2016.5.26, 2015헌라5). ④ 「국회법」 제6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장의 지정상정권한이 신속입법을 위한 무분별 절차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불공정 충돌을 막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헌재 2016.5.26, 2015헌라5). ⑤ 헌재 2008.4.24, 2006헌마358. 10 정답 ③ check ③ 광고물 종수량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조항들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특정구역 안에서 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종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을 두고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광고물 종수량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3.31, 2014헌마79-4). check ① 시기제한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합법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않는 보도까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11.28, 2016헌마90). ②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화 · 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방송협회조합법」에서 후보자선정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매체를 이용한 지지 ·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6.11.24, 2015헌바95).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자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지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심의를 권한만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5.30, 2016헌가14). ⑤ 인쇄물 배부금지 조항은 후보자들 간의 부당한 경쟁과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하다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같은 입법목적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발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 · 도화, 인쇄물의 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 ·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규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인쇄물배부금지의 기간이 선거운동에 게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정되고, 금지내용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관하는 내용의 표현행위"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쇄물 배부금지 조항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6.30, 2014헌바253). 11 정답 ① check ①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의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없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 이는 국가의 일방적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사법상의 권리보다도 기법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헌재 2010.7.29, 2008헌가14). check ② · ③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라는 공권력에 의해 인신구속이라는 중대한 법익에 침해가 발생한 국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기본권이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청구권이 제한되므로 인해서 피해자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⑤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벽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정치적 표현을 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중략)... 다음으로,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규제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장기간의 규제기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는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 제한 시점의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각종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은 앞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중략)...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 도모를 위한 것이나,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방법조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일반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제한된다. 따라서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2022. 7. 21. 2017헌바100, 2021헌바19(병합)).
문제편 74~74p	문제-문항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문제편 74~74p	문제-보기(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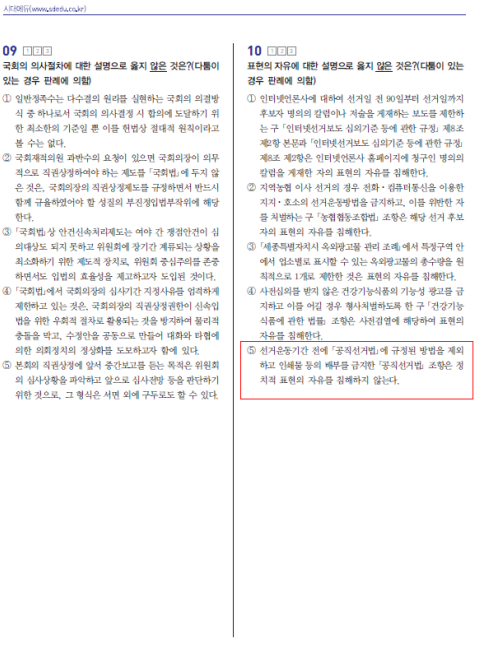 09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정족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 중 하나로서 국회의 의사결정 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하여야 하는 제도를 「국회법」에 두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드시 함께 규율하였어야 할 성질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③ 「국회법」상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 쟁점안건이 심의대상도 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④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이 신속입법을 위한 우회적 절차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물리적 충돌을 막고, 수정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⑤ 본회의 직권상정에 앞서 중간보고를 받는 목적은 위원회의 심사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심사전망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은 서면 외에 구두로도 할 수 있다.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본문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팩스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협협동조합법」 조항은 해당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입소문로 표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74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헌법 문제편	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편 160~160p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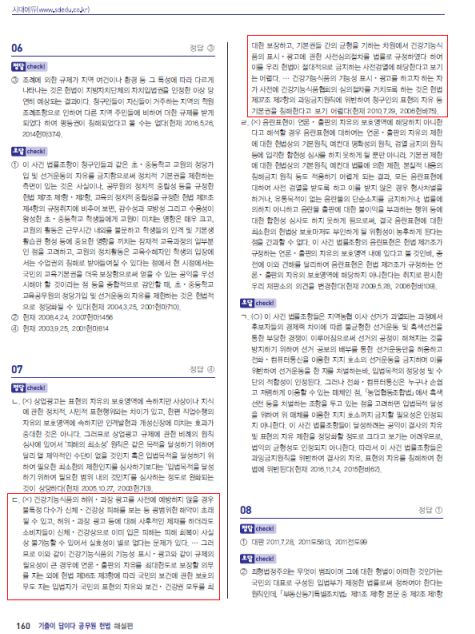 06 정답 ③ Key check ③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청구인들이 자연림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조례조항로 인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다른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게(헌재 2016.5.26, 2014헌마374). Key check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제2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수성과 국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요청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는 장차의 교육공동체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므로 공익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헌재 2004.3.25, 2001헌마710). ② 헌재 2008.4.24, 2007헌마1456 ④ 헌재 2003.9.25, 2001헌마814 07 정답 ④ Key check ㄴ. (×)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표현행위라는 차이가 있고, 헌법 제21수정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없는 덕택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하기보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2005.10.27, 2003헌가30). ㄷ.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어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그러므로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에 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로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7.29, 2006헌바79). ㄹ. (×)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음란표현에 대하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명확성의 원칙, 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 등도 적용되지 아니게 되는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하여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포괄적이고 없는 음란물의 단속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몰수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무인하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란표현은 헌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다(헌재 2009.5.28, 2006헌바109). Key check ㄱ.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지역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명한 지위에 의한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포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팩스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화・팩스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6.11.24, 2015헌바62). 08 정답 ① Key check ① 대법 2011.7.28, 2011도5813, 2011전도99 Key check ② 표현방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사회신분가입법조치법」 제1조 제1항 본문 중 제1조 제1항	ㄷ.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기준 등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5.30, 2019헌가4).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